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9.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 라. 상정일자: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 가. 제안이유

- 법률상담관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상담 서비스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법률상담의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 체계에 맞지 않거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을 모범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담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 신설(안 제4조)
- 법률상담관 해촉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및 별지 서식에서 법률상담의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를 추가하며, 안 제7조의2에 법률상담관 해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검토 결과

- 안 제4조 법률상담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할 책무를 가짐이 「법률구조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7조의 2에 법률상담관 해촉 근거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해임 및 해촉 기준과 관련한 법령입안심사기준 검토 결과, 해촉 사유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한 해촉 사유로 여겨져 개정 타당성이 인정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6
----------	-----

발의연월일: 2025. 11. 7.

발의자: 유승용·김지연·양송이  
신흥식·정선희 의원 (5인)

## 1. 제안이유

법률상담관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상담 서비스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법률상담의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 체계에 맞지 않거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을 모범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담 범위에 아동·청소년 권리 신설(안 제4조)

나. 법률상담관 해촉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생활”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생활”로, “구민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을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상담실)”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무료법률 상담실”을 “무료법률상담실”로 한다.

제3조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외부의 사무실을 정하여”를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법률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행정·민사·형사·가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내 기업활동

3. 아동·청소년 권리 등

#### 4. 그 밖의 법률사항

제5조제1항 중 “상담대상은 영등포구 구민, 기업인, 직장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 영등포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을 “상담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관내 종사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을 “방문상담”으로, “인터넷 온라인라”를 “온라인”으로, “상담 등도”를 “상담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분쟁”을 “분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 책임관이 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법률상담관 해촉)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에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상담자”를 “상담 대상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상담시 방문상담”을 “방문상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를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자”로,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를 “상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요한 행정상”을 “행정상”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민생활</u>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u>구민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생활</u>----- ----- <u>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u> ----- ----- -----.</p>
<p>제2조(상담실) <u>구청장은 구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u></p>	<p>제2조(무료법률상담실 운영)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u>무료법률상담실</u>----- -----.</p>
<p>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u>영등포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외부의 사무실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u></p>	<p>제3조(상담실 위치)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 ----- <u>별도로 마련된 장소에</u> ----- -----.</p>
<p>제4조(상담의 범위) <u>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u></p> <p>2. <u>관내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u></p>	<p>제4조(상담의 범위) <u>법률상담</u>----- ----- -----.</p> <p>1. ----- <u>행정·민사·형사·가사 등</u></p> <p>2. <u>관내 기업활동</u></p>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건축, 노무분야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 사항

<신 설>

제5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대상은 영등포구 구민, 기업인, 직장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 영등포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및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3. 아동·청소년 권리 등

4. 그 밖의 법률사항

제5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관내 종사자로 -----.

② -----  
-----  
-----  
-----  
-----  
-----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담 방법) ① ----- 방문상담-----  
----- 온라인-----  
----- 상담을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  
-----  
-----

갖추고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무료법률 상담 운영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 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법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분쟁

-----  
-----  
-----  
--.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제7조의2(법률상담관 해촉)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에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  
-----  
-- 상담 대상자-----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  
-----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기관 및 부서 등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 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다만, -----  
-----  
-----  
-----  
-----.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자-----  
-----  
-- 상담하여야 한다.

③ ----- 행정상-----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  
----- 필  
요한 -----  
-----.

[별지 서식]

접 수 번 호		<b>법률상담 기록부</b>		접 수 일
No.				. . .
신청인	성 명		성 별	남 / 여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연 락 처	
구분 (V 표시)		<input type="checkbox"/> 행정(법규위반, 처분, 부과 등) <input type="checkbox"/>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세무, 노무 등) <input type="checkbox"/> 가사(혼인, 호적, 상속 등) <input type="checkbox"/>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교통사고, 각종 사건사고 등) <input type="checkbox"/> 관내 기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권리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법률사항		
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				
처리구분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추가회신 필요	기타
법률상담관 (                      )				